

11.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

재정경제부령 제79호 1999. 5. 7.

개 정 이 유

기업구조조정을 하는 법인의 합병시에 대주주가 받은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평가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고,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·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과 무채재산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기업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적합한 법인의 합병시에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,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(제10조의2제2항).
- 나.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대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건축하거나 재취득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, 이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함(제16조제3항).
- 다.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·공채 및 사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

준일 현재의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기간·이자율·
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2회이상의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
국채등의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(제18조의2).

라. 특허권·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
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한 연수를 차감
하여 계산하되, 그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하도
록 함(제19조제3항).

※ 본문 생략

주택회보